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79 발의연월일: 2024. 12. 6.

발 의 자:서삼석·조인철·소병훈

전재수 · 문대림 · 이병진

이원택 · 김동아 · 안도걸

문금주・이개호・허 영

강훈식 • 조계원 • 황명선

서미화 · 임미애 · 박희승

오세희 · 장종태 · 김영배

신정훈 · 임호선 · 김교흥

주철현 • 전종덕 • 서영교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임(안 제11조제4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경우 동일한 사유(포괄적인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	개 정 안
제11조(계엄의	해제)	1	~	3	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~ ③
(생 략)				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		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계
					엄을 해제한 경우 동일한 사유
					(포괄적인 취지가 동일한 경우
					를 포함한다)로 다시 계엄을
					선포할 수 없다.